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04

발의연월일: 2025. 1. 2.

발 의 자: 박지혜·박정현·김성환

한준호 • 민형배 • 위성곤

이소영 · 이용우 · 조인철

이건태 · 김문수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산업용지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에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자가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그 용지를 임대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는 데 제한이 있는 상황임.

이에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중 매립이 완료된 폐기 물 처리시설 용도의 산업용지의 경우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 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확대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 임(안 제38조의3 등).

법률 제 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제1호 중 "자"를 "자(이하 "태양에너지발전사업자"라한다)"로 한다.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8조의3(산업용지 임대의 특례) 제38조의2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할 수 있다.
 - 1. 입주기업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일부에 대하여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기존 제조시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
 - 2. 입주기업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제33조제8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중 매립이 완료된 폐기물처리시설용도 또는 이와 유 사한 시설용도의 산업용지로 한정한다)에 태양에너지발전사업자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 |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 |
| 사업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에 | 사업 등) ① |
| 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 | |
| 사업을 하려는 자(지원기관과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 |
| 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 | |
| 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 |
|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15조 | |
|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 | |
| 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 |
|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 | |
| 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 | |
| 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 |
| 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
|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기 | |
|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 | |
| 다. | |
| 1. 제16조제3항에 따라 부분가 | 1 |
| 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받은 | |
| 건축물에 「신에너지 및 재생 | |
|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 | |
| 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 | |

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u>자</u>에게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2. (생략)② ~ ⑧ (생략)

제38조의3(연접한 입주기업체에 대한 임대) 제38조의2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에 대하여 연접한입주기업체가 기존 제조시설과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의 일부를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임대할 수 있다.

-----<u>자(이하 "태양</u> <u>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한다)</u>--

- 2. (현행과 같음)
-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8조의3(산업용지 임대의 특례)
제38조의2에도 불구하고 입주
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
업용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
대할 수 있다.

- 1. 입주기업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일부에 대하여 연접한입주기업체가 기존 제조시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연계하여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
- 2. 입주기업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제33조제8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중 매립이 완료된 폐기물처리시설용도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용도의 산업용지로 한정한다)에 태양 에너지발전사업자가 태양에너 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 우